###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6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 김상훈 · 송언석 · 황보승희

김승수・이주환・최승재

윤재옥ㆍ이 영ㆍ윤한홍

김희국 · 강대식 · 곽상도

김영식 · 유경준 · 권은희

전봉민 · 홍석준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 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제4호 삭제).

법률 제 호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	<u>&lt;</u> 삭 제>
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